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영국

정민아 (영국 셰필드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 머리말

근로자의 은퇴소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영국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연금법(Pension Act 2008)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사용자는 일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근로자가 탈퇴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퇴직연금 가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50인 이상 대기업과 50인 이상 250인 미만의 일부 중소기업까지 제도가 적용되어 2014년 8월 현재 4백만 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되었으며, 올해만 하루 평균 6천 명꼴로 백만 명이 가입했다고 노동연금부가 밝혔다.¹⁾ 모든 사용자에게 자동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2018년 2월이 되면 1,100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될 것으로 영국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와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함께 설립된 국민고용저축신탁(NEST: 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을 중심으로 영국의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의 대부분은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2014). *Automatic enrolment into a work pension: Key facts*을 요약·정리한 것이며, 이 외의 참고사항들은 해당 부분에 각주로 표시하였다.

1)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work-pensions>(최종 접속일 2014. 9. 9)

■ 퇴직연금 자동가입 요건과 제도의 확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은퇴 후 소득보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중에 사용자 주도로 마련되는 저축의 한 형태로, 영국에서는 기업연금(company pension), 직업연금(occupational pension), 혹은 직장연금(works pension)이라고도 불린다. 2012년 10월부터 사용자는 ① 퇴직연금 미가입자이면서 ② 22세 이상 ③ 국가연금 수급개시연령 미만의 ④ 연수입 1만 파운드²⁾ 이상인 근로자가 자격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고 기여금을 분담해야 한다. 근로자가 탈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가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른데(표 1 참조), 각 사용자에게 대한 구체적인 적용 날짜는 총 원천징수(PAYE: Pay-As-You-Earn) 근로자의 수에 따라 산정된다. 사용자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그들의 제도 이행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연금감독원이 각 사용자에게 정확한 적용 날짜를 미리 알려준다.³⁾ 적용 날짜를 통보받은 사용자는 해당 일로부터 3개월까지 자동가입 제도 선택을 연기할 수 있는데, 연기를 결정한 사용자는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이에 대해 알려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자동가입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신규로 발생했을 때 ‘연기 기간’ 신청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등록을 연기할 수도 있다.

〈표 1〉 사용자 규모별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 적용 시기

사용자 규모	시기
250인 이상	2012. 10 ~ 2014. 2
50인 이상 250인 미만	2014. 4 ~ 2015. 4
50인 미만	2015. 6 ~ 2017. 4
2012년 4월 이후 설립 기업	2017. 5 ~ 2018. 2
확정급여형(DB)나 하이브리드 플랜을 선택한 사용자	2017. 9. 30.까지 자동가입 적용을 미룰 수 있음

2) 기준이 되는 연소득액은 매년 재검토됨.

3) <http://www.thepensionsregulator.gov.uk/employers/tools/staging-date.aspx>(최종 접속일 2014. 9. 9)에서 적용 날짜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탈퇴를 유도하는 우대책들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퇴직연금을 탈퇴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우대할 수 없고, 퇴직연금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불법해고해서도 안 된다.⁴⁾

■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에서 기여율의 산정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플랜이나 확정기여형의 한 형태인 ‘금전구입제 (money purchase scheme)’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모든 기여금이 근로자가 은퇴할 때까지 투자되고 연금급여액은 기여금액과 투자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퇴직연금 플랜이 총 급여액의 일부를 비과세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수령하도록 한다. 영국 정부는 확정기여형 플랜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세제혜택을 통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최소 기여율을 근로자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최소 기여율은 5,772파운드에서 41,865파운드 연소득 구간⁵⁾에 속한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적용된다. <표 2>에서 보듯이, 현재는 사용자가 근로자 월급의 1%를, 근로자는 월급의 0.8%, 감세를 통한 정부의 기여가 근로자 월급의 0.2%로 모두 합쳐 2%지만, 2018년 10월부터는 총 기여율이 근로자 월급의 8%가 된다. 정부가 정해 놓은 기여율은 말 그대로 최소 기여율이다. 원한다면 사용자도 근로자도 최소 기여율보다 높은 비율의 기여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플랜이나 하이브리드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기도 한다. 영국에서 ‘최종급여제 (final salary)’ 혹은 ‘경력평균제 (career average)’로 알려져 있는 해당

4)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thepensionsregulator.gov.uk/docs/pensions-reform-safeguarding-individuals-v4.pdf>(최종 접속일 2014. 9. 9)를 참조.

5) 기준 연소득 수치는 회계연도마다 바뀔 수 있다. 또 퇴직연금 자동가입 소득 기준이 1만 파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기여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에 이보다 낮은 연소득이 포함되는 이유는 연소득이 5,772 파운드 이상인 파트타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자동가입 및 사용자의 기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press, 2014년 8월 20일자, “Auto-enrolment scheme: Pensions boost will serve up a brighter future,” <http://www.express.co.uk/finance/personalfinance/501411/Pension-auto-enrolment-boost-will-serve-up-a-brighter-future>(최종 접속일 2014. 9. 9)을 참조.

〈표 2〉 정부, 사용자, 근로자의 최소 기여율(근로자 월급 기준) 변화

(단위 : %)

	기업가계급	신중산계급	노중산계급	노동자계급
2012. 10. 1 ~ 2017. 9. 30	2	0.2	1	0.8
2017. 10. 1 ~ 2018. 9. 30	5	0.6	2	2.4
2018. 10. 1 ~	8	1	3	4

자료 : 2017. 10. 1 ~ 2018. 9. 30 기간의 정부 세제혜택 및 근로자 기여율은 류건식(2011),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 규정 도입과 시사점」, *KiRi Weekly*, pp.10~12, 보험연구원에서 발췌함. 나머지 정보는 모두 <https://www.gov.uk/workplace-pensions/what-you-your-employer-and-the-govemment-pay>(최종 접속일 2014. 9. 9)에서 발췌함.

형태의 퇴직연금은 연금가입연수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급여액이 산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연금급여액 일부에 대해 비과세 일시불 수령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정기적인 수입으로 수령한다는 점은 확정급여형과 같다. 확정급여형과 하이브리드 퇴직연금을 채택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표 1>에서 보듯이 2017년 9월 30일 이후로 별도의 자동가입 제도 적용 시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확정급여형 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플랜 내에서 기여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의 근로자 혜택과 탈퇴 및 재가입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더욱 쉽고 부담 없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 기여금과 정부의 세제혜택의 도움을 받아 본인 기여금의 두 배를 적립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자동가입에 의해 등록된 퇴직연금을 탈퇴할 수 있다. 공식 등록일로부터 한 달 내에 탈퇴하면 이미 지불된 모든 기여금은 반환된다. 그러나 한 달 후에 탈퇴하게 되면 가입된 퇴직연금에 따라 지불된 기여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고 은퇴할 때까지 해당 퇴직연금 플랜에 남아 있게 된다.

근로자는 자동가입 되었던 퇴직연금을 탈퇴하거나 기여금 납입을 중단했다가 다시 가입할 수도 있다. 12개월에 한 번씩 사용자는 재가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두 번째 기여금 납입 중단 후 12개월 안에 재가입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국민고용저축신탁(NEST: 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⁶⁾

영국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자동가입 제도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국민고용저축신탁(NEST)을 함께 도입했다. NEST는 중·저소득층을 위해 정부 후원으로 새롭게 설계된 퇴직연금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여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되고, 기여율은 정부가 정한 최저 기여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표 2 참조).

노동연금부로부터 120백만 파운드를 차입하여 설립된 국민고용저축신탁공사(NEST Corporation)가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데 사용자의 이용수수료는 없고 연간 운영수수료는 적립금의 0.3%에 불과하다. 회계연도 2014~15년의 적립 상한선은 4,600파운드⁷⁾이나, 사업장 규모나 산업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NEST는 사용자가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퇴직연금 플랜이 자동가입 제도가 요구하는 일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파트타임과 같은 중·저소득 근로자를 포괄하기 어려울 경우 사용자가 선택하기 유용한 퇴직연금 플랜으로 보인다.

6) 이 부분은 류건식(2011),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 도입과 시사점」, *KiRi Weekly*, pp.10~12, 보협연구원; 권혁창·김평강(2013), 「OECD 주요 국가들의 연금개혁의 효과성 연구」, 국민연금연구원을 주로 참조함.

7) Financial Times, 2014년 9월 8일자, “Nest pension restrictions to be lifted in 2017”, <http://www.ft.com/cms/s/0/23f8d51a-374f-11e4-b45c-00144feabdc0.html#axzz3CoxGBLwu> (최종 접속일 2014. 9. 10)

■ 맺음말

영국은 근로자의 은퇴 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를 2012년에 도입했다.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는 퇴직연금 미가입자이면서 22세 이상 국가연금 수급개시연령 미만의 1만 파운드 연소득 근로자를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기여금을 분담해야 하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한다. 사용자에게는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를 반드시 가입시킬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는 자동가입된 퇴직연금을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는 의무적 사적연금이라기보다 준의무적 사적연금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동가입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 2월에 이르면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용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을 통한 정부의 최소 기여율을 정해 근로자가 좀 더 쉽고 부담 없이 재직 중에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자의 최소 기여율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근로자 월급의 총 8%가 적립되도록 하고 있다.

자동가입 제도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2012년 함께 도입된 정부 후원 퇴직연금인 국민고용저축신탁(NEST)은 저렴한 수수료와 사업장 규모 및 산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 중·저소득 근로자와 소기업의 필요에 맞게 설계된 것이다. 국민고용저축신탁공사에 의해 운영되며, 확정기여형 플랜으로 연금급여액은 기여금의 운용실적에 영향을 받는다.

국가연기금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Pension Fund)에 따르면,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는 수년 동안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금 개혁으로 평가된다. 최근 매우 획기적인 변화가 더해졌는데, 지난 2014년 3월 19일 조지 오스본 재무 장관은 회계연도 2014~15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55세 이상의 확정기여형 연금가입자는 2015년부터 연금급여액을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⁸⁾ 현재는 심각한 병이 없는 이상 55세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나 연금수령 방식은 보험사와 상담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55세부터 연금급여액을 본인 의사에 따라 수령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

8) Money Marketing, 2014년 3월 19일자, "Budget 2014: George Osborne drops bombshell on pensions flexibility", <http://www.moneymarketing.co.uk/news-and-analysis/pensions/budget-2014-george-osborne-drops-bombshell-on-pensions-flexibility/2008135.article> (최종 접속일 2014. 9. 10)

며 전체 급여액이 3만 파운드를 넘지 않는다면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전체 급여액의 25%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소득범주에 따라 소득세를 내도록 한다. **KLI**